

예 산 총 칙

2008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37,796,000	4,133,880
일반회계	134,400,000	4,032,000
일반회계	134,400,000	4,032,000
기타특별회계	3,396,000	101,88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16,000	6,480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	1,600,000	48,000
주차장사업특별회계	1,380,000	41,400
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	200,000	6,000

제 2 조 세입 ·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· 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313,303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